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4. 26.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4월 18일 ·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4월 20일 원안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3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2007. 4. 26)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박 종 인)

가. 제안이유

-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기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써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조성 비율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별도 제정·시행(2006. 1. 1)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재원을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30%이상에서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 중 구 귀속분의 100%로 하여 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확대함 (안 제3조제5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7조제3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결산 보고서 작성을 출납예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함 (안 제11조제1항)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박 성 열) —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4. 質 疑 및 答 辯 要 旨 (생 략)

5. 討 論 要 旨 (없 음)

6. 修 正 案 의 要 旨 (없 음)

7.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